

작성 방법

1. ⑨ 소득구분코드: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"(30)"에, 그 밖의 사업소득은 "(40)"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2. ⑩ 전환정비사업조합원 등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에서 발생하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과 「주택법」 제2조제9호의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「소득세법」 제87조 및 제43조에 의해 공동사업자로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 "여1"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3. ⑫ 신고유형코드: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란에 "○"표시를 합니다.
 - 가. 자기조정(자기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): 11
 - 나. 외부조정(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): 12
 - 다. 「소득세법」 제87조의2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으로 신고·납부하는 경우: 13
 - 라.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: 20
 - 마.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: 31
 - 바.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: 32
4. ⑬ 과세기간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1)의 9쪽 ⑫ 과세기간개시일과 ⑬ 과세기간종료일을 적습니다.
5. 총수입금액 (⑭・⑮): 공동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을 적습니다.
6. ⑯ 필요경비: 공동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를 적습니다.
7. ⑰ 소득금액: (⑮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 - ⑯ 해당 연도 필요경비)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.
8. ㉓ 가산세: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「소득세법」 제81조제1항(지급명세서미제출·지연제출가산세)·제3항(계산서 관련 가산세)·제4항(증빙불비가산세, 2007. 7. 1. 이후 적용됩니다)·제5항(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)·제6항(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)·제7항(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)·제8항(무기장가산세)·제9항(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, 2008. 1. 1. 이후 적용됩니다)·제10항(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, 2007. 7. 1. 이후 적용됩니다)·제11항(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, 2007. 7. 1. 이후 적용됩니다)에 따른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.
9. ㉔ 특별징수세액: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습니다.

※ 기재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.